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5. 2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0.6.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윤민선】

가. 제안이유

동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안 제8조)
- 2)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안 제9조)
- 3)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10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세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당사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한 대리인 선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제도 대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러한 개정 조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를 신설하였는바,
- 개정 조례안 제8조에서는 대리인 신청 요건으로 신청인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절차와 요건이 충족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해야 함을, 제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살펴 본 바, 기본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